



Safe at Home 공공기관 등록 신청서 -

보충 정보

1. 정부법 §6215.2 (d)에 따라, 공공기관 직원인 신청자와 공공기관 근무로 위협이나 폭력에 직면한 계약자가 납부해야 하는 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. 가족 구성원도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 - a. 캘리포니아 규정집(CCR) 22100.2 (a)에 따라 신청 수수료는 \$30입니다.
 - b. 신청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Safe at Home에서는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.
2. 신청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 - a. 신청서와 함께 우편으로 국무부 장관실로 \$30이 기재된 수표 또는 우편환 지급.
 - **참조: 이 방법이 가장 쉽고 안전한 지불 방법입니다.**
 - b. 신청서와 함께 우편으로 \$30의 현금 지급.
 - c. 신청서 하단에 "신용 카드로 지불하겠습니다"이라고 기재 후 신용카드로 지급. 이 경우, Safe at Home팀 직원이 신청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받음.
3. 정부법 §6215.2 (f)에 따라, 공공기관 근무로 인해 협박과 폭력에 직면한 공공기관 직원 및 계약자는 4년간 유효합니다.